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건 서

2019. 5.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수신 : 인천광역시장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9. 4. 1. ~ 4. 30.(3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신은호(인천시의회 의원)
- 위 원 : 박인동(인천시의회 의원)
- 위 원 : 전재운(인천시의회 의원)
- 위 원 : 노경수(전의원)
- 위 원 : 김중진(전직공무원)
- 위 원 : 고재성(세무사)
- 위 원 : 정인호(전문가)
- 위 원 : 민혜정(공인회계사)
- 위 원 : 박남수(공인회계사)
- 위 원 : 이동현(세무사)

|| 목 차 ||

◇ 결산검사 의견서	1
Ⅰ. 결산검사 기본방향 및 범위	3
Ⅱ. 결산검사 결과(결산서 서면분석)	5
1. 총 괄	6
2. 일반회계	9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라. 예비비지출	
마. 채무부담행위	
바. 금고의 결산	
3. 특별회계	18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예비비지출	
라. 금고의 결산	
4. 채권결산	25
5. 채무결산	26
6. 기금결산	27
7. 재무결산	28
Ⅲ. 시정 및 개선사항	32

◇ 결산검사 의견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인천광역시장 귀하

2019. 4. 30.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결산위원의 선임)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로부터 인천광역시 2018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1일부터 2019년 4월30일까지(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일부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신 은 호
위 원	박 인 동
위 원	전 재 운
위 원	노 경 수
위 원	김 중 진
위 원	고 재 성
위 원	정 인 호
위 원	민 혜 정
위 원	박 남 수
위 원	이 동 현

The block contains ten handwritten signatures, each corresponding to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listed in the table to the left. The signatures are written in black ink and are placed over horizontal lines. From top to bottom, the signatures correspond to: Shin Eun-ho, Park In-dong, Jeon Jae-un, No Kyung-soo, Kim Jung-jin, Go Jae-seong, Jeong In-ho, Min Hye-jung, Park Nam-soo, and Lee Dong-hyun.

1. 결산검사 기본방향 및 범위

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및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세출 등 제 장부의 열람, 증빙서류 대조, 현장 확인, 잔액증명 확인과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거쳤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결산총괄의 통계, 기본사항 및 재정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에 포함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II. 결산검사 결과(결산서 서면분석)

II. 결산검사 결과

1. 총 관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집행잔액 ㉢	순세계 잉여금 ㉡-㉢-㉣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			
합 계	10,168,730	10,286,579	8,492,359	1,794,220	697,635 (1,636)	20,470	1,076,115
일 반 회 계	6,758,214	6,826,508	6,493,525	332,983	225,853 (845)	4,226	102,904
특 별 회 계	3,410,516	3,460,071	1,998,834	1,461,237	471,782 (791)	16,244	973,211
공기업특별회계	1,565,354	1,592,684	886,911	705,773	218,417	3	487,353
기타특별회계	1,845,162	1,867,387	1,111,923	755,464	253,365 (791)	16,241	485,858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별도 표시

- ▶ 자금없는 이월액 : 3건 사업 1,636백만원(국비 미교부)
- 일반회계 : 2건 (농축산유통과 배수개선사업 345백만원, 농축산유통과 농업기반정비 500백만원)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 1건 791백만원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10,168,730백만원의 101.2%인 10,286,57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826,50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460,071백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3.5%인 8,492,35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493,525백만원, 특별회계가 1,998,834백만원임.
- 결산상 잉여금은 총 1,794,220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2,983백만원, 특별회계가 1,461,237백만원임.
- 결산상 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697,635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 1,636백만원 미포함)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0,470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6,115백만원임.

【 최근 5년간 결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예산현액	8,999,822	△32	9,790,472	8.8	9,608,049	△1.9	10,039,014	4.5	10,168,730	1.3
세입결산액	8,396,223	△5.0	9,491,604	13.1	9,563,149	0.8	10,085,335	5.5	10,286,579	1.9
세출결산액	7,875,319	△2.3	8,755,073	11.2	8,291,683	△5.3	8,502,067	2.5	8,492,359	△0.1
결산상잉여금	520,904	△32.7	736,531	41.39	1,271,466	72.6	1,565,268	23.1	1,794,220	14.6
다음연도이월액	468,166	△14.2	542,564	15.9	520,132	△4.1	602,151	15.8	697,635	15.9
보조금집행잔액	8,181	50.5	4,553	△44.3	2,521	△44.6	4,572	81.4	20,470	347.7
순세계잉여금	44,557	△80.1	189,414	325.1	767,479	305.2	958,545	24.9	1,076,115	12.3

- 예산현액은 10,168,73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0.1%감소함.
- 최근 5년간 세입결산 평균 증가율 5.2%로 세출결산 평균 증가율 1.9%보다 3.3%p 높고, 세입결산액,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16회계연도에는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1.9%, 세출결산액은 5.3%, 보조금집행잔액은 44.6% 감소하였으며, 2018회계연도에는 세출결산액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함.
- 다음연도이월액은 계속비사업이 2013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14년에는 14.2%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5회계연도에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5.9% 증가하고, 다시 2016회계연도에 4.1% 감소하였으며, 2018회계연도에는 사고이월 건수 증가와 도시철도사업 계속비이월 등으로 15.9% 증가함.
-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1,076,115백만원으로, 세출구조 혁신 및 세수 확보 등 지속적인 세입 증대 노력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였으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대비 초과세입 발생으로 정확한 세수추계 및 예산대비 계획성 있는 집행이 요구되며, 특별회계는 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전년대비 (%)	2018	전년대비 (%)
계		9,563,149	10,085,335	105.46	10,286,579	102
자체수입		5,272,972	5,354,201	101.54	5,129,625	95.81
	지 방 세	3,251,682	3,627,146	111.55	3,617,519	99.73
	세 외 수 입	2,021,290	1,727,055	85.44	1,512,106	87.55
이전수입		2,506,489	2,608,211	104.06	2,927,390	112.24
	지 방 교 부 세	458,770	553,759	120.71	575,202	103.87
	보 조 금	2,047,719	2,054,452	100.33	2,352,188	114.49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783,688	2,122,923	119.02	2,229,564	105.02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전년대비 (%)	2018	전년대비 (%)
계		8,291,683	8,520,067	102.75	8,492,359	99.67
일반회계		6,094,512	6,562,923	107.69	6,493,525	98.94
	일 반 공 공 행 정	1,191,797	1,456,981	122.25	1,053,529	72.31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07,336	112,600	104.9	147,195	130.72
	교 육	708,520	708,703	100.03	715,168	100.91
	문 화 및 관 광	309,181	272,365	88.09	243,777	89.5
	환 경 보 호	133,379	186,497	139.82	202,477	108.57
	사 회 복 지	1,979,996	2,115,259	106.83	2,426,869	114.73
	보 건	40,249	37,849	94.04	36,523	96.5
	농 립 해 양 수 산	114,008	138,726	121.68	138,511	99.85
	산 업 · 중 소 기 업	63,019	66,359	105.3	65,295	98.4
	수 송 및 교 통	720,326	655,963	91.06	670,885	102.27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45,024	297,910	121.58	255,676	85.82
	과 학 기 술	49,534	39,371	79.48	37,682	95.71
	기 타	432,143	474,340	109.76	499,938	105.4
특별회계		2,197,171	1,957,144	89.08	1,998,834	102.1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086,925	1,014,748	93.36	886,912	87.4
	기 타 특 별 회 계	1,110,246	942,396	84.88	1,111,922	117.99

2. 일반회계

가. 세 입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세목별	구분	예산현액 ㉔	징수결정액 ㉕	실수납액 ㉖	불납 결손액㉗	미수납액 ㉘-㉙-㉚	수납률(%)	
							㉘/㉔	㉖/㉕
계	2018	6,758,214	7,046,818	6,826,508	40,113	180,197	101.0	96.9
	2017	6,907,701	7,450,805	6,977,426	37,683	435,696	101.0	93.6
	증감률	△2.2%	△5.4%	△2.2%	6.4%	△58.6%		
지방세	2018	3,557,727	3,827,642	3,617,519	39,562	170,561	101.7	94.5
	2017	3,546,061	4,089,257	3,627,146	37,258	424,853	102.3	88.7
세외수입	2018	242,184	256,126	245,939	551	9,636	101.6	96.0
	2017	600,612	604,542	593,274	425	10,843	98.8	98.1
지방교부세	2018	547,238	552,938	552,938			101.0	100.0
	2017	524,325	529,076	529,076			100.9	100.0
보조금	2018	1,836,963	1,836,246	1,836,246			100.0	100.0
	2017	1,668,883	1,665,371	1,665,371			99.8	1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018	574,102	573,866	573,866			100.0	100.0
	2017	567,820	562,559	562,559			99.1	100.0

○ 2018회계연도 세입 실수납액은 예산현액 6,758,214백만원의 101.6%인 6,826,50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인 150,91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0,19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7,046,818백만원 대비 수납률은 96.9%로 전년도 93.6%보다 3.3% 증가함.

【 실제 수납액 자원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실 제 수납액	자 체 수 입					이 전 수 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계	지방세	세외수입			계	지 방 교부세	보조금	
				소 계	경 상 적 세외수입	임 시 적 세외수입				
2018	6,826,508	3,863,458	3,617,519	245,939	97,612	148,327	2,389,184	552,938	1,836,246	573,866
2017	6,977,426	4,220,420	3,627,146	593,274	86,169	507,105	2,194,447	529,076	1,665,371	562,559
증감액	△150,918	△356,962	△9,627	△347,335	11,443	△358,778	194,737	23,862	170,875	11,307
증감률	△2.2	△8.5	△0.3	△58.5	13.3	△70.8	8.9	4.5	10.3	2.0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6,826,50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인 150,91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는 9,627백만원과 세외수입 347,335백만원은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3,862백만원, 보조금은 170,875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1,307백만원 증가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11,443백만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358,778백만원 감소함.

○ 실제 수납액 대비 자체수입 비율은 56.6%으로 전년대비 4% 감소하였고, 이전수입 비율은 34.9%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음.

○ 지방세의 42.1%를 차지하는 취득세로 부동산규제가 강화되어 거래건수가 급격히 감소(주택매매거래량 전년 동기대비 △13.1%)하여 징수액이 감소하였고,

○ 세외수입 감소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473억원 감소가 주요 요인이며,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도소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등 감소하였음.

○ 지방교부세 23,862백만원 증가는 누락된 행정수요 기초 통계 발굴 등이며, 보조금은 작년대비 170,87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목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구성비(%)	2018년	2017년	증·감
합 계	7,046,818	180,197	100.0	2.6	6.4	△3.8
지 방 세	3,827,642	170,561	94.6	4.5	11.3	△6.8
보 통 세	3,246,497	71,523	39.7	2.2	2.2	0
목 적 세	470,476	16,085	8.9	3.4	3.3	0.1
지난년도수입	110,669	82,953	46.0	74.9	93.0	△18.1
세 외 수 입	256,126	9,636	5.4	3.8	1.9	1.9
경상적세외수입	98,824	1,193	0.7	1.2	1.3	△0.1
임시적세외수입	157,302	8,443	4.7	5.4	1.9	3.5
지방교부세등 기타	2,963,050					

-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80,19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7,046,818백만원에서 수납액 6,826,508백만원과 불납결손액 40,113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 미수납액 중 지방세 비율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세목은 지난년도 수입 82,953백만원(46.0%), 보통세 71,523백만원(39.7%) 중 자동차세 32,928백만원(18.0%), 지방소득세 29,724백만원(16.0%), 취득세 6,095백만원(3.0%), 주민세 2,767백만원(2.0%)등으로 지난년도 수입의 체납이 과다함.
- 미수납률은 2.6%로 전년대비 3.8% 감소 하였으나, 과목별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관리로 안정적 재정확충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유									
	계	무 재 산	행 방 불 명	납 세 태 만	폐 업 또 는 부 도	채 무 자 회 생 법 에 의 한 유 예	소 송 계 류	국 외 이 주	자 금 압 박	기 타
계	180,197	16,097	4,665	6,741	9,409	5,722	373	13	102,605	34,572
자 방 세	170,561	15,789	4,651		9,186	5,722	361	13	102,551	32,288
세 외 수 입	9,636	308	14	6,741	223		12		54	2,284

- 사유별로는 무재산 16,097백만원(8.9%), 행방불명 4,665백만원(2.6%), 납세태만 6,741백만원(3.7%), 폐업 또는 부도 9,409백만원(5.2%),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5,722백만원(3.2%), 소송계류 373백만원(0.2%), 국외이주 13백만원(0.1%), 자금압박102,605백만원(56.9%), 기타 34,572백만원(19.2%)임.

【 전년도 대비 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총 수 납		환 급 액		실 수 납	
	수납액㉔	증감률	반환액㉕	반환률 (㉕/㉔)	실수납액㉖	수납률 (㉖/㉔)
당해년도	6,953,410	△1.3	126,901	1.8	6,826,508	98.2
전 년 도	7,046,118	10.4	68,692	1.0	6,977,426	99.0

- 2018회계연도 총 수납액은 6,953,410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하였으며, 환급액은 126,901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8%증가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0.8% 감소한 6,826,508백만원 임.

【 세입금 환급액 현황 】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환급액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국 보 조 금 등
	소 계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 입	소 계	정상적 수 입	임시적 수 입	
126,901	100,810	27,299	1,920	71,591	23,066	18,061	5,005	3,025

○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행정 기관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기타
계 (%)	126,901 (100)	18,297 (14.4)	39,748 (31.3)	19,342 (15.2)	7,021 (5.5)	33,069 (26.2)	266 (0.2)	9,158 (7.2)
지 방 세	100,810	345	39,748	19,331	7,021	33,069	1	1,295
세외수입	23,066	17,911		11				5,144
국고보조금 등	3,025	41					265	2,719

- 세입금 환급액 사유는 납세자 권리구제(지방세심의위원회, 심판청구 및 소송 결정 등)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경정통보에 따른 지방세 부과액의 경정 및 납세자의 취득물건 연부취득 취소, 과세물건·세율·과세표준의 착오신고 및 자동차세 연납 및 과세 이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에 따른 일할계산 경정 후 환부하는 차량, 미등기 등에 따른 환부가 전체 환부의 78.2%를 차지함.
- 또한 감면대상 착오·세율 및 과세 표준액 착오 등 행정기관 과세 착오에 의한 환부와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의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비용 지급에 의한 지방세 환급 발생 등이 있음.

나. 세 출

【 세출 결산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분야별		예산액 ㉑	예산 성립 증감액 ㉒ ㉓	예산현액 ㉔=㉑+㉒	지출액 ㉕	다음연도 이월액 ㉖	보조금 반납액 ㉗	집행잔액 ㉘=㉔-㉕ ㉙-㉖
합 계	2018년	6,508,410	249,803	6,758,213	6,493,525	226,698	4,765	33,225
	2017년	6,761,624	146,077	6,907,701	6,562,923	249,803	4,167	90,808
	증감률	△10.4	71	△2.2	△1.1	△9.2	14.4	△63.4
일 반 공 공 행 정		1,055,424	1,297	1,056,721	1,053,529	654	2	2,536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48,844	437	149,281	147,195	2,034	3	49
교 육		715,189		715,189	715,168			21
문 화 및 관 광		244,410	1,565	245,975	243,776	1,144	12	1,043
환 경 보 호		210,182	16,864	227,046	202,477	21,174	1,634	1,761
사 회 복 지		2,430,345	18,927	2,449,272	2,426,868	18,712	2,042	1,650
보 건		35,446	1,300	36,746	36,522		90	134
농 립 해 양 수 산		149,484	55,295	204,779	138,512	63,382	278	2,607
산 업 · 중 소 기 업		64,575	4,206	68,781	65,295	1,718	335	1,433
수 송 및 교 통		655,872	119,383	775,255	670,884	95,584	184	8,603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45,766	37,871	283,637	255,676	22,296	76	5,589
과 학 기 술		37,717		37,717	37,681			36
예 비 비		9,185	△7,985	1,200				1,200
기 타		505,971	643	506,614	499,942		109	6,563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세출 예산액 6,508,410백만원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49,803백만원을 포함한 6,758,213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6.1%인 6,493,52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6,69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의 0.5%인 33,22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이는 전년도 1.3%대비 0.8%p감소한 수치로 불용액이 발생함.

- 예산을 편성할 때에 주민의 복리증진과 경비 지출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 및 계획성 있는 집행이 요구됨.

【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당해년도	173	226,698	63	36,073	33	7,570	77	183,055
전년도	208	249,803	92	45,679	39	21,620	77	182,504
증감률(%)	△16.8	△9.2	△31.5	△21	△15.4	△64.9		0.3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된 금액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226,698백만원으로, 전년 249,803백만원 대비 9.2% 감소함.

- 명시이월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조정,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63건 36,073백만원(16%)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와 공기부족 등으로 33건 7,570백만원(3.3%)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77건 183,055백만원(80.7%)이 발생하였음.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 사고이월은 전년대비 64.9% 감소하였으나, 계속비 이월은 0.3% 증가하는 등 이월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됨.

【 국고 보조금 집행현황(이월액 포함)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령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집행잔액
당해연도	1,851,826	1,823,377	98.5	23,646	4,803
전년도	1,557,376	1,543,739	99.1	9,469	4,168
증감률	18.9	18.1	△0.6	149.7	15.2

-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수령액(이월액 포함)은 전년대비18.9% 증가한 1,851,826백만원으로 1,823,377백만원(98.5%)을 집행하고, 23,646백만원(1.3%)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803백만원(0.3%)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국고보조금 집행률은 전년대비 18.1%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5.2% 증가함.

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 1) 예산이용 : 없음
- 2) 예산전용 및 이체

(단위 : 백만원)

건수	예산액	전용·이체 금액		사유	구분
		감액	증액		
4건	340	72	72	· 시민참여 행사 등	예산전용
233건	132,768	130,603	130,603	· 조직개편	예산이체

- 예산전용은 4건 72백만원, 예산이체는 233건 130,603백만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 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전용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공탁금 등 7,986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968백만원을 지출하고 1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집 행 내 용	지 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 6건	7,985	7,967		18
강화군 강풍 피해 신속복구를 위한 재해 대책비	19	19		
강화군 폭염 및 가뭄 피해(7~8월)재해 대책비	47	47		
고병원성 AI 유입방지를 위한 군구 긴급 방역비 지원	410	410		
한파(유빙)피해 김양식장(강화)재해복구비	18	18		
경인고속도로 직전화 사업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공탁금	7,461	7,443		18
파티션 전도 인명사고 관련 민사소송 강제 조정 판결금 지급	30	30		

마.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바. 금고의 결산

(단위 : 백만원)

세입결산액 ㉑	세출 결산액 ㉒	잔액 ㉑-㉒ (금고보관액)	비 고
6,826,508	6,493,525	332,983	

3. 특별회계

가. 세 입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분	예산현액 ㉑	징 결 정 액 ㉒	실 제 수 납 액 ㉓	불 납 결 손 액 ㉔	미수납액 ㉕=㉒-㉔ -라	비율(%)	
								㉕/㉑	㉕/㉒
합 계		2018	3,410,517	3,516,517	3,460,071	491	55,955	101.5	98.4
		2017	3,131,313	3,176,435	3,107,909	934	67,592	99.3	97.8
공 기 업	소 계	2018	1,565,354	1,611,304	1,592,684	99	18,521	101.7	98.8
		2017	1,682,913	1,720,957	1,685,598	544	34,815	100.2	97.9
	상 수 도 사 업	2018	465,011	465,168	460,533	77	4,558	99.0	99.0
		2017	435,859	440,878	424,428	215	16,235	97.4	96.3
	하 수 도 사 업	2018	215,855	241,141	233,375	22	7,744	108.1	96.8
		2017	219,932	231,289	218,083	323	12,883	99.2	94.3
	경제자유구역사업	2018	884,488	904,995	898,776		6,219	101.6	99.3
		2017	1,027,122	1,048,790	1,043,087	6	5,697	101.6	99.5
기 타	소 계	2018	1,845,162	1,905,212	1,867,386	392	37,434	101.2	98.0
		2017	1,448,400	1,455,478	1,422,311	390	32,777	98.2	97.7
	학교용지부담금	2018	23,417	33,694	33,694			143.9	100.0
		2017	25,503	26,731	26,731			104.8	100.0
	의 료 급 여 기 금	2018	450,891	450,891	450,891			100.0	100.0
		2017	404,283	379,259	379,259			93.8	100.0
	검 단 1 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6,053	6,053	6,053			100.0	100.0
		2017	3,112	3,375	3,375			108.4	100.0
	검 단 2 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5,087	5,087	5,087			100.0	100.0
		2017	3,226	3,226	3,226			100.0	100.0
	원 당 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9,134	9,134	9,134			100.0	100.0
		2017	5,325	5,325	5,325			100.0	100.0
	당 하 지 구 토 지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21,690	21,688	21,688			100.0	100.0
		2017	8,779	8,996	8,996			102.5	100.0
	오 류 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42,017	43,397	43,397			103.3	100.0
		2017	14,502	15,345	15,345			105.8	100.0
	마 전 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25,443	25,443	25,443			100.0	100.0
		2017	27,477	25,147	25,147			91.5	100.0
	불 로 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14,001	18,168	18,168			129.8	100.0
		2017	5,909	5,911	5,911			100.0	100.0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분	예산현액 ㉑	징 결 정 액 ㉒	실 수 납 액 ㉓	불납 결손액 ㉔	미수납액 ㉕=㉒-㉔ ㉕	비율(%)	
								㉕/㉒	㉕/㉓
기 타	도시교통사업	2018	58,712	73,579	61,815	386	11,378	105.3	84.0
		2017	66,049	79,948	68,439	374	11,135	103.6	85.6
	광역교통시설	2018	50,261	77,477	51,607		25,870	102.7	66.6
		2017	21,099	48,075	26,470		21,605	125.5	55.1
	도시철도사업	2018	360,428	360,566	360,566			100.0	100.0
		2017	304,466	300,781	300,781			98.8	100.0
	도 시 개 발	2018	38,479	42,703	42,703			111.0	100.0
		2017	34,217	35,979	35,979			105.1	1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2018	359	359	359			100.0	100.0
		2017	351	351	351			100.0	100.0
	기 반 시 설	2018	2,341	2,350	2,350			100.4	100.0
		2017	2,561	2,299	2,299			89.8	100.0
	지 하 도 상 가	2018	22,191	22,695	22,695			102.3	100.0
		2017	19,681	20,655	20,655			104.9	100.0
	인 천 광 역 시	2018	78,955	77,489	77,489			98.1	100.0
		아시아경기대회	2017	135,478	127,225	127,225			93.9
	안산시도시개발 주변지역환경개선	2018	290,995	292,621	292,621			100.6	100.0
		2017	203,266	204,411	204,411			100.6	100.0
	재 난 안 전	2018	5,886	5,886	5,886			100.0	100.0
		2017	17,929	16,827	16,827			93.9	100.0
	소 방	2018	141,068	139,089	139,049	6	34	98.6	100.0
		2017	131,788	132,241	132,200	16	25	100.3	100.3
	수 질 개 선	2018	15,332	15,319	15,319			99.9	100.0
		2017	12,777	12,737	12,737			99.7	100.0
	공 공 폐 수	2018	3,337	3,095	2,943		152	88.2	95.1
		2017	622	634	622		12	100.0	98.1
	원도심활성화	2018	179,080	178,429	178,429			99.6	100.0

- 공기업과 신설(원도심활성화)를 포함한 26개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3,410,517백만원이며, 전년대비 279,204백만원(8.9%)이 증가하였고,

실제수납액은 3,460,07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1.5%로 전년대비 2.2%,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8.4%로 전년대비 0.6% 증가함.

- 공기업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92,91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445,075백만원이 감소함.

- 491백만원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55,95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다소 감소하였음.

나. 세 출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㉑	지 출 액 ㉒	집행률 ㉓=㉒/㉑	다음연도 이월액㉔	보조금 반납금 ㉕	집행잔액 (㉑-㉒-㉔-㉕)
특 별 회 계	2018	3,410,517	1,998,834	58.6	472,573	18,524	920,586
	2017	3,131,313	1,957,144	62.5	352,740	403	821,026
공기업특별회계	2018	1,565,354	886,912	56.7	218,417	3	460,023
	2017	1,682,913	1,014,748	60.3	165,793	88	502,372
상 수 도 사 업	2018	465,011	268,933	57.8	47,162		148,916
	2017	435,859	264,082	60.6	43,218		128,559
하 수 도 사 업	2018	215,855	184,406	85.4	9,702		21,747
	2017	219,932	197,991	90.0	3,782		18,159
경제자유구역사업	2018	884,488	433,573	49.0	161,553	3	289,359
	2017	1,027,122	552,675	53.8	118,793		355,654
기 타 특 별 회 계	2018	1,845,162	1,111,922	60.3	254,156	18,521	460,563
	2017	1,448,400	942,396	65.1	186,947	315	318,742
학교용지부담금	2018	23,417	23,272	99.4			145
	2017	25,503	25,441	99.8			62
의 료 급 여 기 금	2018	450,891	449,950	99.8			941
	2017	404,283	378,595	93.6			25,688
검 단 1 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6,053	216	3.6			5,837
	2017	3,112	5	0.2			3,107
검 단 2 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5,087	5,084	99.9			3
	2017	3,226	2,239	69.4			987
원 당 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9,135	1,624	17.7			7,511
	2017	5,325	5,099	95.8			226
당 하 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21,690	53	0.2			21,637
	2017	8,778	276	3.1			8,502
오 류 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42,017	29,569	70.4	116		12,332
	2017	14,502	5,003	34.5	6,773		2,726
마 전 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25,443	2,705	10.6	1,566		21,172
	2017	27,477	5,909	21.5	3,446		18,122
불 로 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18	14,001	1,375	9.8	10,056		2,570
	2017	5,909	2,719	46.0	1,237		1,953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㉑	지 출 액 ㉒	집행률 ㉓=㉒/㉑	다음연도 이월액㉔	보조금 반납금 ㉕	집행잔액 (㉑-㉒-㉔-㉕)
도시교통사업	2018	58,712	31,177	53.1	1,276	115	26,144
	2017	66,049	48,230	73.2	6,425	56	11,338
광역교통시설	2018	50,261	20,651	41.1	20		29,590
	2017	21,099	7,311	34.7	7,229		6,559
도시철도사업	2018	360,428	176,277	48.9	149,603	16,116	18,432
	2017	304,466	177,968	58.5	121,935		4,563
도 시 개 발	2018	38,479	1,795	4.7			36,684
	2017	34,218	91	0.3			34,12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2018	359					359
	2017	351					351
기 반 시 설	2018	2,341	1				2,340
	2017	2,561	3	0.1			2,558
지 하 도 상 가	2018	22,191	5,320	23.9			16,871
	2017	19,681	3,027	15.4			16,654
인 천 광 역 시 아시아경기대회	2018	78,955	68,508	76.7		2,166	8,281
	2017	135,478	115,024	84.9	13,900	194	6,36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2018	290,995	38,572	13.3	12,968		239,455
	2017	203,266	30,688	15.1	6,355		166,223
재 난 안 전	2018	5,886	5,499	93.4			387
	2017	17,929	16,010	89.3			1,919
소 방	2018	141,068	124,542	88.3	8,689		7,837
	2017	131,788	115,310	87.5	10,345	48	6,085
수 질 개 선	2018	15,332	14,775	96.4	154	123	280
	2017	12,777	3,307	25.9	9,302	17	151
공 공 폐 수	2018	3,337	1,940	58.1			1,397
	2017	622	141	22.7			481
원도심활성화	2018	179,080	109,015	60.9	69,707		358
	2017						

- 신설(원도심활성화) 및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26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410,51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998,834백만원(58.6%)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2,57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9,833백만원(33.9%)이 증가함.

-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460,023백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29.4%이고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48,917백만원(32%) 하수도사업 21,747백만원(10.1%), 경제자유구역사업 289,358백만원(32.7%)임.
- 23개 기타특별회계의 불용률은 24.9%이나 회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점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각각 90% 이상의 높은 불용률을 나타냈고 있음.

【 특별회계 이월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도별	이 월 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당 해 년 도	472,573	64,829	20,536	387,208
전 년 도	352,740	48,526	10,166	294,048
증감률(%)	5.7%	33.6%	102.0%	31.7%

-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9%로 명시이월 69건 64,829백만원, 사고이월 26건 20,536백만원, 계속비이월 171건 387,208백만원이고,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9%로, 명시이월 29건 25,215백만원, 사고이월 7건 13,615백만원, 계속비이월 120건 179,587백만원으로 계속비 이월 비중이 높고,
-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8%로 명시이월 40건 39,614백만원, 사고이월 19건 6,921백만원, 계속비이월 51건 207,621백만원으로 계속비 이월 비중이 높음.

【 국고 보조금 집행현황(이월포함)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수령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집행잔액
계	155,026	100,498	64.8	37,973	16,555
소 계	107,079	61,546	57.5	29,062	16,471
하수도사업	4,733	3,610	76.3	1,123	
경제자유구역사업	7,333	7,331	99.9	0	2
소 방	1,725	1,725	100	0	0
수질개선	15,014	14,737	98.2	154	123
도시교통	1,295	1,174	90.7	5	116
도시철도	66,343	26,697	40.2	23,610	16,036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10,636	6,272	58.9	4,170	194

【 국고 보조금 집행현황(이월포함)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수령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집행잔액
소계	47,947	38,952	81.2	8,911	84
원도심활성화	44,097	35,806	81.2	8,207	84
상수도사업	3,850	3,146	81.7	704	0

○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수령액(이월 포함)은 155,026백만원으로 100,498백만원 (64.8%)를 집행하고 37,973백만원을 이월하여 반납예정액은 16,555백만원임.

다.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집행내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기타특별회계	2건	246	241		5
소방	이레화학 화재발생시 전소된 소방 펌프차 구매	190	185		5
도시철도	인천도시철도2호선 차량운행시스템물품 대금 청구 중재 사건 종결에 따른 중재비용	56	56		

라. 금고의 결산

2018회계연도 금고의 기타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수입액 (세입결산액)	지출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금고보관액)	비고
특별회계	3,460,070	1,998,834	1,461,236	
공기업특별회계	1,592,684	886,911	705,77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0,532	268,933	191,59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3,375	184,406	48,969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898,776	433,573	465,203	

회 계 명		수입액 (세입결산액)	지출액 (세출결산액)	차입잔액 (금고보관액)	비고
	기타특별회계	1,867,386	1,111,923	755,46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3,694	23,272	10,42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0,891	449,949	942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053	215	5,838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087	5,084	3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134	1,624	7,510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1,688	53	21,635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3,397	29,570	13,827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5,444	2,705	22,738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8,167	1,374	16,79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1,815	31,177	30,63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1,607	20,651	30,956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60,566	176,277	184,289	
	도시개발특별회계	42,703	1,795	40,90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58	0	358	
	기반시설특별회계	2,350	1	2,349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2,695	5,320	17,374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77,489	68,508	8,981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92,621	38,572	254,049	
	수 질 개 선	15,319	14,775	544	
	공 공 폐 수 시 설	2,942	1,940	1,002	
	소 방	139,049	124,542	14,507	
	재 난 안 전	5,886	5,499	387	
	원 도 심 활 성 화	178,429	109,015	69,414	

4. 채권결산

【 채 권 현 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 감 액	당 해 년 도 말 현 재 액				
			계	보증금 채 권	융자금 채 권	미수금 채 권	기타 채 권
합 계	503,016	42,953	545,969	105	202,830	342,984	50
일 반 회 계	36,982	△752	36,230	82	35,972	126	50
공기업특별회계	324,188	18,675	342,863	5		342,858	
기타특별회계	29	△4	25	18	7		
기 금	141,817	25,034	166,851		166,851		

-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545,96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함.
-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105백만원, 융자금채권 202,830백만원, 미수금채권 342,984백만원이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6,230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42,863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5백만원, 기금 166,851백만원임.
- 채권내역으로는
 - 일반회계 보증금채권은 전화선예치 및 중국 위해시 직원숙소 임차 보증금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학자금 대여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대여 등 임.
 - 공기업특별회계 보증금채권은 전화선예치 및 유선방송 보증금이고, 미수금 채권은 재산매각 미수금임.
 - 기타특별회계 보증금채권은 전화선예치금이고 융자금채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진료비 융자임.
 - 기금 융자금채권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에너지 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 발생함.
- 향후 미수금과 융자금 미상환액의 적극적인 회수를 통한 재정운영 건전화가 요구됨.

5. 채무결산

【 채 무 현 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 감 액 (조상액포함)	당 해 년 도 말 현 재 액					
			계	차입금	(기타) 지방채 증 권	지역개발 채 권	채무부 담행위	보증채 무이행 책임액
계	2,244,919	△196,048	2,048,871	168,428	1,880,443			
일반회계	408,615	△72,737	335,878	135,248	200,630			
공 기 업 특별회계	140,995	△15,109	125,886	33,180	92,706			
기 타 특별회계	972,989	△84,686	888,303		888,303			
기 금	722,320	△23,516	698,804		698,804			

-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대비 △8.7%인 196,048백만원이 감소한 2,048,871백만원임.
- 종류별로는 차입금 168,428백만원, 지방채증권과 기타지방채증권 1,880,443백만원이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35,878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25,886백만원, 기타특별회계 888,303백만원, 기금 698,804백만원으로
 - 세부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5,360백만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80,526백만원이고,
 -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5,853백만원,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792,450백만원이며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698,804백만원임.
- 채무감소액이 196,048백만원으로 전년도 422,385백만원 대비 대폭 감소함.

6. 기금결산

【 조 성 총 괄 】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종 류 별				
	합 계 (16종)	1,379,979	5,136	1,385,115	
1	통합관리기금	138,743	5,173	143,916	
2	남북교류협력기금	1,620	1,004	2,624	
3	지방채상환기금	464	12,835	13,299	
4	지역개발기금	931,011	△15,149	946,160	
5	지방세발전기금	104	7	111	
6	재난관리기금	67,017	16,399	83,416	
7	재해구호기금	31,178	6,621	37,799	
8	사회복지기금	11,121	272	11,393	
9	식품진흥기금	6,653	△77	6,730	
10	양성평등기금	4,109	△13	4,122	
11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69	305	674	
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4,451	△14,386	68,837	
13	중소기업육성기금	94,725	△19,917	114,642	
14	에너지사업기금	27,141	△5,272	32,413	
15	농어촌진흥기금	11,273	△471	11,744	
16	남동산업단지및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17,805	17,805	신설

- 인천광역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6종으로 전년대비 0.3%인 5,136백만원이 증가한 1,385,115백만원임.
- 지역개발기금 등 7종은 감소하였고, 통합관리기금 등 9종은 증가하였음.
- 기금의 당해연도 총지출액은 315,287백만원이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편성된 지출계획액 320,423만원의 98.4%를 집행함.

7. 재무결산

【 재무제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B-A)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A)	총비용(B)	운영결과	
2018년	50,373,184	2,879,309	47,493,875	8,155,174	7,335,371	(819,803)	
2017년	51,357,663	3,097,554	48,260,109	8,367,367	6,785,827	(1,581,540)	
증감	(984,479)	(218,245)	(766,234)	(212,193)	549,544	761,737	

- 2018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766,234백만원(1.59%),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대비 761,737백만원(48.16%) 감소함.

【 재무제표 분석 】

가. 재정상태

<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8,657,213	100	51,357,663	100	50,373,184	100
유동자산 ¹⁾	2,207,127	4.54	2,658,508	5.18	2,694,194	5.35
투자자산 ²⁾	5,670,808	11.65	5,892,194	11.47	6,380,400	12.67
일반유형자산 ³⁾	8,362,648	17.19	9,292,930	18.09	13,895,089	27.58
주민편의시설 ⁴⁾	9,830,750	20.20	10,140,960	19.75	4,086,519	8.11
사회기반시설 ⁵⁾	22,577,501	46.40	23,362,915	45.49	23,304,497	46.26
기타비유동자산 ⁶⁾	8,379	0.02	10,156	0.02	12,485	0.03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 2)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 3)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 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 5)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 6)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 총자산은 50,373,18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84,479백만원(1.92%) 감소하였음.

- 유동자산 35,686백만원 증가 :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185,556백만원, 재고자산(판매용부동산) 65,531백만원, 기타유동자산 등 58,684백만원 증가 및 미수세금·세외수입금 등 263,104백만원, 단기대여금 10,981백만원 감소
- 투자자산 488,206백만원 증가 : 장기투자증권 453,421백만원, 장기대여금 34,785백만원 증가
- 일반유형자산 4,602,159백만원 증가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토지 등 증가
-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6,112,859백만원 감소
: 체육시설 자산가액 감소 및 도시철도 이관 등
- 기타비유동자산 2,329백만원 증가 : 무형자산 등 증가

〈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3,967,685	100	3,097,554	100	2,879,309	100
유동부채 ¹⁾	1,240,906	31.28	929,739	30.02	889,197	30.88
장기차입부채 ²⁾	2,490,889	62.78	1,922,143	62.05	1,642,522	57.05
기타비유동부채 ³⁾	235,890	5.94	245,672	7.93	347,589	12.07

1)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2)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 총부채는 2,879,30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8,245백만원(7.05%) 감소하였음.

- 유동부채 40,542백만원 감소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83,573백만원 증가 및 기타 유동부채 124,115백만원 감소
- 장기차입부채 279,621백만원 감소 : 차입금 37,599백만원 및 지방채증권 242,022백만원 상환
- 기타비유동부채 101,917백만원 증가 : 장기BTL미지급금 등 101,917백만원 증가

나. 재정운영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819,80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61,737백만원 (48.16%)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6,793,942	100	6,785,827	100	7,335,371	100
인건비 ¹⁾	524,622	7.72	565,633	8.34	592,217	8.07
운영비 ²⁾	1,510,222	22.23	1,417,461	20.89	1,079,862	14.72
정부간이전비용 ³⁾	3,478,678	51.20	3,604,400	53.12	3,927,660	53.54
민간등이전비용 ⁴⁾	807,774	11.89	848,024	12.50	1,388,669	18.93
기타비용 ⁵⁾	472,645	6.96	350,308	5.15	346,962	4.74

- 1)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 2)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 3)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 4)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 5)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 총비용은 7,335,37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49,544백만원(8.10%) 증가하였음.

- 운영비 337,599백만원 감소 : 이자비용 및 위탁대행사업비 등 337,599백만원 감소
- 정부간이전비용 323,260백만원 증가 : 시도비보조금 및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등 323,260백만원 증가
- 민간등이전비용 540,645백만원 증가 : 민간보조금 등 540,645백만원 증가
- 기타비용 3,346백만원 감소 : 자산 감가상각비 등 기타 비용 감소

〈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7,645,907	100	8,367,367	100	8,155,174	100
자체조달수익 ¹⁾	4,978,681	65.12	5,569,569	66.56	5,056,290	62.00
정부간이전수익 ²⁾	2,520,637	32.97	2,621,015	31.32	2,934,141	35.98
기타수익 ³⁾	146,590	1.91	176,783	2.12	164,743	2.02

1)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

2)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3)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 총수익은 8,155,1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2,193백만원(2.54%) 감소하였음.

- 자체조달수익 513,279백만원 감소 : 지방세 274,955백만원, 세외수익 238,324백만원 감소
- 정부간이전수익 313,126백만원 증가 : 지방교부세 22,443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290,683백만원 증가
- 기타수익 12,040백만원 감소 : 전기오류수정이익 등 감소

Ⅲ. 시정 및 개선사항

시정 및 개선, 제안사항

연번	건 명	해당부서	페이지
1	인천문화재단 기금목표액 재조정 및 사업 추진 검토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34
2	송도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제고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36
3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 개선 방안 강구	세정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37
4	세입 체납정리와 결손처분 미흡에 대한 조치강구	세정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39
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 강구	교통국	41
6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설정 및 관리개선	신성장산업과외	43
7	드론산업 예산확보 노력	항공과	45
8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한 활용 방안 마련	예산담당관실외	47
9	연구용역사업 이월예산편성 부적정 개선권고	관광진흥과외	49
10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매각대금 회수 철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50
11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향후 대책 강구	공원녹지과	51
12	공유재산에 대한 자산관리 철저	재산관리담당관	52
13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미지급금 대체분개 반영	회계담당관	54

인천문화재단 기금목표액 재조정 및 사업추진 검토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1. 현 황

- 인천시는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 목표를 설정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운영을 목적으로 기금특별 회계를 조성함. 2004년 395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말 현재 53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상태에서 그 이자만을 이용하여 2018년의 경우 35개의 각종 문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연도별 기금적립 현황>

- ◆ 설치 근거 : 인천광역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목 적 : 문화예술진흥 사업 운영·지원 및 재단 운영
 ◆ 목 표 액 : 1,000억원 (2020년까지 조성. 조례 제9조)
 ◆ 조 성 액 : 53,490백만원 (조성율 53.49%)

(단위:백만원)

구분		적립주체			적립기금	비고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기타		
소계		50,573	792	2,125	53,490	
연도별 적립 현황	2004년	39,573	-	-	39,573	설립자본금
	2005년	1,000	50	619	1,669	
	2006년	3,000	-	625	3,625	
	2007년	1,000	-	124	1,124	
	2008년	2,000	42	174	2,216	
	2009년	-	-	124	124	
	2010년	2,000	-	179	2,179	
	2011년	100	-	99	199	
	2012년	100	358	94	552	
	2013년	100	92	87	279	
	2014년	-	-	-	-	
	2015년	-	10	-	10	
	2016년	-	-	-	-	
	2017년	1,200	10	-	1,210	
	2018년	500	230	-	730	

2. 문제점

- 기금조성 목적은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이 너무 포괄적이고 기금조성 또한 2004년에만 395억원이 조성되었을 뿐, 그 이후에는 10억원 정도의 미미한 금액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과 2016년의 경우에는 조성액이 0원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조성실적이 낮고 2020년까지 예상했던 1,000억원의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 기금 1,000억원을 목표 달성 시까지 무기한 예치만 해놓고 중요문화 사업이 적기 집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를 들어 2004년에 조성된 395억원의 경우 2004년의 화폐가치와 현재의 화폐가치를 비교한다면 일부 금융 이자를 수익으로 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감사의견

- 먼저 기금조성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여 시행의 우선시기를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문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당초 취지의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 2020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기금 조성 방향 및 목표액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문화사업 발전을 위해 기부한 기부금 전액을 사용치 않은 것은 후원자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바 적절한 사업에 집행할 것을 촉구함.

송도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제고

담당부서 : 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

1. 현 황

- 송도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야생조류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2009년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2012년 습지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용역 실시로 1단계 83억, 2단계 463억 등 총 사업비 546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고, 2017년까지 54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이며, 2018년에는 1,48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환경단체 등 민원제기로 사업시행이 전면보류 또는 취소될 상태에 있음.

2. 문제점

- 당초 송도개발을 위한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으로 조류 개체수가 급감하고 대체서식지 조성이 시급하여 야생조류 서식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체서식지 조성방안이 시급하여 습지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등 랍사르 습지 등록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9년이 경과함.
- 2018년에 민간단체들의 민원제기가 발생하게 되자 인공섬인 저어새 섬이 남동유수지와 중복인 점, 인공섬 취소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야생조류 대체 서식지의 문제점을 제기함.
- 보호를 위해 인공섬보다 대체습지조성이 필요하다는 민간단체의 지적 등으로 대체습지조성 실시설계를 위한 또 다른 예산 편성이 요구됨에 따른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제기됨.

3. 감사의견

-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와 대체 서식지 조성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됨
- 이미 투입된 용역비 548백만원이 낭비되었고, 또 다른 대체습지 조성에 따른 추가 예산이 투입하게 됨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당초 계획 시행일이 지연되더라도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의견조율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 개선방안 강구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1. 현 황

○ 최근 3년간 세입금 환급현황

(단위:백만원)

회계 연도	구 분	환급 액	사 유 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기타
2018	합 계	132,315	18,599	39,872	19,346	7,021	33,070	266	14,141
	일 반 회 계	126,901	18,297	39,748	19,341	7,021	33,070	266	9,158
	특 별 회 계	5,414	302	124	5				4,983
	기타특별회계	5,414	302	124	5				4,983
	도시교통사업	774	256	124	5				389
	광역교통사업	640	46						594
	도시철도사업	4,000							4,000
2017	합 계	74,854	1,971	22,700	13,512	5,857	18,430	66	12,316
	일 반 회 계	68,692	1,971	22,699	13,510	5,857	18,430	66	6,157
	특 별 회 계	6,162	0	1	2				6,158
	기타특별회계	6,162	0	1	2				6,158
	소 방	1		1					
	검단폐수종말 처리	0			0				
	도시교통사업	61	0		1				59
2016	광역교통시설	6,098							6,098
	합 계	61,053	733	412	4,074	55,833	18,430	66	12,316
	일 반 회 계	57,980	686	407	4,068	52,817	18,430	66	6,157
	특 별 회 계	3,073	46	4	6	3,016			6,158
	기타특별회계	3,073	46	4	6	3,016			6,158
	소 방	3	3						
	검단폐수종말 처리	0		0					
	도시교통사업	74	43	4	6	21			59
	광역교통시설	2,993				2,993			6,098
	도시철도사업	0				0			

○ 2018회계 일반회계 중 “행정기관 착오” 환급금의 주요 사유

(단위:건/ 백만원)

구 분	금 액	건 수	사 유
지 방 세	345	3,529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등
세 외 수 입	17,952	25	부과과목 착오 및 이중부과 등

2. 문제점

- ‘행정기관 착오’의 사유로 지방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세입행정의 신뢰도 저하 및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소지가 있음.
- 불필요한 환급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고, 행정력의 낭비 발생

3. 감사의견

- 세입금 환급의 경우 납세자착오 또는 법령개정과 같이 통제 불능한 사유가 있고, 행정기관 착오와 같이 통제 가능한 사유가 있음.
- 행정기관 착오 사유 내에서도 대외적인 환급과 대내적인 부서간 예산 배정 및 변경의 경우, 부서간 전용, 환급되는 세입금도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으로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
- 통제 가능한 세입금 환급 사유에 대하여 면밀한 모니터링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과 같은 개선이 종합적으로 필요함.
 - 세입세출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교육
 - 세입징수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매뉴얼 보완
 - 상대적으로 큰 금액(예산 배정, 추경, 감액 등)은 관리자의 검토(징수·감액 결의 철저)를 득하도록 업무처리
 - 세외수입 시스템의 개선방안 연구
 - 부서간 예산 배부 및 전용에 대한 환급발생건도 행정기관 착오 환급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대외와 내부부서간의 환급을 구분하여 결산반영 필요

세입 체납정리와 결손처분 미흡에 대한 조치강구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1. 현 황

○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결손 처분액	사 유 별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	평가액 부족	기 타
합 계	40,505	38	1,865	243	20,474	92	17,777	16
일 반 회 계	40,114	38	1,480	243	20,468	92	17,777	16
특 별 회 계	391		385		6			
기 타 특 별 회 계	391		385		6			
소 방	6		0		6			
도시교통사업	385		385					

※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시 결손처분액 : 406억원

○ 일반회계 결손처분 : 401억원(징수결정액 7조 468억원의 0.57%)

- 지방세(396억원) : 지방소득세 1,309백만원, 자동차세 18백만원, 주민세 및 자동차세 1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백만원, 지방교육세 6백만원, 지난연도 수입 38,225백만원 등
- 세외수입(5억원) : 지난연도수입 5억원

○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미수 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또는 부도	채무자회생 법제정후유예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 타
합 계	217,630	34,441	6,074	18,938	9,409	5,722	372	13	104,841	37,820
일 반 회 계	180,196	16,097	4,664	6,741	9,409	5,722	372	13	102,605	34,573
특 별 회 계	37,434	18,344	1,410	12,197					2,236	3,247
기 타 특 별 회 계	37,434	18,344	1,410	12,197					2,236	3,247
소 방	34	3	1	5						25
공공폐수처리시설	152									152
도시교통사업	11,377	3,102	1,409	3,796						3,070
광역교통시설	25,871	15,239		8,396					2,236	

※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시 미수납액 : 2,361억원

2. 문제점

-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의 절차를 보면 납기내에 납부를 못할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 내 납부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압류 등을 신속히 하고 공매 등을 통해 체납에 충당하고 예금과 보험에 대해서도 즉시 압류를 통해 현금화하여 체납에 충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자는 거래처의 채권 확보, 법인의 경우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체납에 충당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 미수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토지정보 조회와 예금 등의 조회만을 실시한 후 무재산 또는 평가액부족으로 결손처분하고 시효가 도래하면 시효소멸사유로 결손처분하고 있는 상태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처분의 절차를 하여야 함.
-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처의 채권압류를 실시하고 보험조회 등을 통해 발견 즉시 압류 조치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여부를 파악하여 조세채권이 시기를 놓쳐 일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3. 감사의견

- 체납처분 절차는 강제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정보와 납부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방치하지 말고
- 개인체납자의 경우에는 예금 외 보험채권 및 배우자의 은익재산 확보에도 주력해야 함.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를 통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유무 등도 확인하여 적극적인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유무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이에 따라 차후 적극적인 체납처분 계획수립을 통해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 강구

담당부서 : 교통국

1. 현 황

○ 최근 3년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표1〉 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비율
2018	58,712	73,578	61,814	386	11,377	75.9%
2017	57,759	79,947	68,438	374	11,509	77.2%
2016	56,091	71,339	59,552	505	11,788	72.0%

〈표2〉 실제수납액대비 지난년도 수납액의 비교

(단위 : 백만원)

연도	실제수납액	현년도수납액	지난년도수납액	전년도수납액/ 이월액비율
2018	37,023	36,438	585	1.6%
2017	38,879	37,626	1,253	3.2%
2018	30,310	28,650	1,660	5.5%

〈표3〉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무재산	비율	행방불명	비율	납세태만	비율	기타	비율
2018	11,378	3,102	28%	1,409	12%	3,797	33%	3,070	27%
2017	11,509	-	-	-	-	3,276	28%	8,233	72%
2016	11,788	373	3%	462	4%	7,500	64%	3,453	29%

2. 문제점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중 과년도 대비 실제 수납액은 66억,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2017년도 85.6%, 2018년도 84%로 전년대비 1.6% 감소하였고 결손액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실수납액 중 지난년도 수납액 대비 이월액 비율도 2017년도 3.2%에서 2018년도 1.6%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한 미수납액의 비율도 증가함으로써 실질적 세수 감소로 나타남.

3. 감사의견

- 미수납액이 전년대비는 감소하는 세입개선의 노력은 있으나, 수치상 개선되는 실질적인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인 <표3>과 같이 무재산 및 납세태만 등의 지능화 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설정 및 관리 개선

담당부서 : 신성장산업과 외

1. 현 황

- 성과보고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지표별 측정산식에 의한 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꾀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환류 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8년 인천광역시에서는 213개의 정책사업목표, 54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개)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결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24	213	548	75	407	66	7,605,447	7,257,110	348,337

2. 문제점

- 성과분석시 성과미달성, 초과달성한 경우 해당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차기 사업의 목표에 반영해야 하나 적절한 목표설정에 대해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

3. 감사의견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정책사업과 재정지출의 연계성이 수반되어야 함.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서는 전기까지의 달성도를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초과하는 수준의 목표치 설정을 고려해야 함.
- 성과계획의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도출 및 측정산식은 목표와 관련성이 있고 해당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관리해야 함.

[붙임]

부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신성장산업과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활용 (개수)	인천N방송 월 평균 접속 수	목표	1,200,000	320,000
			실적	950,000	472,000
			달성률(%)	79%	147%
	뷰티산업 육성 지원(백만원)	휴띠끄(‘어울’)) 매출액	목표	5,000백만원	2,000백만원
			실적	5,065백만원	2,269백만원
			달성률(%)	101%	113%
안전정책과	안전영상(CCTV) 설치(대수)	교부액	목표	200	165
			실적	200	213
			달성률(%)	100%	129%
특별사법경찰과	불법 공중위생 영업행위 단속 으로 시민건강 도모(건)	입건건수	목표	10	10
			실적	23	48
			달성률(%)	230%	480%
복지정책과	민간자원 연계 건수(건)	행복나눔 인천 시스템	목표	100,000	5,200
			실적	113,074	14,616
			달성률(%)	113%	181%
	기부식품 모집 목표액달성 (천원)	기부식품 통계시스템	목표	6,800,000	7,000,000
			실적	9,020,171	11,251,363
			달성률(%)	132%	160%
여성정책과	여성·아동 폭 력예방 및 지 원실적 (건)	성·가정폭력 상담소 상담건 수, 1366 및 해바라기센터 상담지원 건수	목표	50,000	50,000
			실적	76,374	79,911
			달성률(%)	152%	159%
보건환경연구원	건강한 시민을 위한 보건강화 (건, 회)	검사건수	목표	13,550	13,175
			실적	18,116	18,989
			달성률(%)	134%	144%
	식·의약품 등 먹거리안전성 강화(건)	검사건수	목표	13,085	12,991
			실적	16,927	17,819
			달성률(%)	129%	137%
	환경안전성 조사(건)	검사건수	목표	7,200	6,900
			실적	10,265	9,418
			달성률(%)	143%	136%

드론산업 예산확보 노력

담당부서 : 항공과

1. 현 황

- 인천은 국내 첫 드론인증센터와 드론 전용 비행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국가에서도 드론산업을 선도 산업으로 선정함.
- 인천시는 2018년 드론을 이용한 갯끈풀 분포조사, 도시 대기오염원 감시, 산불조기경보시범운영, 해수욕장범죄예방, 홍보용 항공촬영 등을 시범 운전하였음.
- 청라 로봇랜드에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드론레이싱협회 등 관련 6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음.

<2018년 사업추진내역>

관련분야	사업내용	비 고
안전관리	등산로 자동경로비행 실시	산악
안전관리	IR 카메라를 이용한 산불조기경보	산악
안전관리	해수욕장 이동형 드론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원격 감시체계	해수욕장
환경	해양유해생물(갯끈풀)서식지 모니터링	해양
환경	도시대기측정소 설치지역 인근 대기오염원 감시	대기오염측정
항공촬영	도시 경관 변화 기록물 생성에 이용	홍보, 역사기록

<2019년 사업내역>

관련부서	사업내용	비 고
종합건설본부	공익사업 손실보상 현장조사	촬영을 통한 정책증거 확보
수질환경과	무인항공기(드론)활용 하천유지관리	환경관리
재난대응과	드론 활용 사회재난 대응	재난/재해
도서지원과	유해 해양생물 서식 분포 현황 조사	환경관리
연수경찰서	송도신도시 바다 해안지역 수색 및 정찰	안전관리
항공과	드론 군집비행을 활용한 문화공연	문화/체험

2. 문제점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합 계	1,495	
2016년	200	
2017년	405	
2018년	500	
2019년	390	

- 2016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드론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금액임.
-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이 공공서비스 시범운영과 드론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 등 초기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예산운영이 아니라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감사의견

- 인천은 1,046.27km²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면적 1위이며 167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행정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드론을 이용한 어업관리와 산불, 농업관리에 필수적임.
- 드론 관련 산업시장은 소프트웨어, 연관부품산업(액션 카메라기업, 고성능 배터리산업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으며, 드론 관련 단순 제조산업과 산업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4차산업의 핵심기술임.
- 드론이 활용가능한 분야는 IT, 통신산업, 농업, 보험업 등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인천시는 드론 인증센터와 드론전용비행장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드론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재 저조한 예산을 증액할 것을 권고함.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한 활용 방안 마련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실 외

1. 현 황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용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현재 총 16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금은 특정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제도임.
- 인천시의 기금은 2018회계연도에 총 16개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 1,379,979백만원 중 2018회계연도 당해연도 5,136백만원이 증가되어 2018회계 연도말에는 1,385,115백만원이 조성됨.

2. 문제점

- 각 기금별 목적사업과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2019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자수입 감소와 자체수입만으로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3. 감사의견

- 특히 지방채상환 기금은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중도상환가능 기간 등이 상이하여 효과적인 지방채 조기 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수적인 바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 기금간의 역할조정, 용도에 맞는 사업의 적극 발굴 지원, 출연금 확보와 기금 규모 확대 운영 증대 및 기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기 금 조 성 총 괄 】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종 류 별				
	합 계 (16종)	1,379,979	5,136	1,385,115	
1	통합관리기금	138,743	5,173	143,916	
2	남북교류협력기금	1,620	1,004	2,624	
3	지방채상환기금	464	12,835	13,299	
4	지역개발기금	931,011	△15,149	915,862	
5	지방세발전기금	104	7	111	
6	재난관리기금	67,017	16,399	83,416	
7	재해구호기금	31,178	6,621	37,799	
8	사회복지기금	11,121	272	11,393	
9	식품진흥기금	6,653	△77	6,574	
10	양성평등기금	4,109	△13	4,094	
11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69	305	674	
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4,451	△14,386	40,064	
13	중소기업육성기금	94,725	△19,917	74,808	
14	에너지사업기금	27,141	△5,272	21,869	
15	농어촌진흥기금	11,273	△471	10,803	
16	남동산업단지 및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17,805	17,805	신설

연구용역사업 이월예산편성 부적정 개선 권고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외

1. 현 황

○ 연구용역 이월사업

(단위:백만원)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시이월액
계	10개 사업	1,525
관광진흥과	관광기반시설 확충	120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중장기계획수립 용역	83
환경정책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68
공원녹지과	공원형 도시재생방안 연구	200
공원녹지과	지역산림 계획수립	150
버스정책과	시내버스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45
고속도로재생과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기본구상수립용역	300
시설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개발정비 및 보존	200
건축계획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115
건축계획과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수립연구용역	244

2. 문제점

- 인천시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는 연구용역비 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부 불요불급한 용역 시행과 당해연도 용역비 집행을 저조에 따른 이월사업 과다 발생
- 사업부서별 용역비 계상의 과다 책정 및 다년간 동일사업용역 발주로 예산 낭비 초래

3. 감사의견

-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사업들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사업 최소화 요구
- 사업부서별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예산요구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관리되도록 조치바람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매각대금 회수 철저

담당부서 : 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

1. 현 황

○ 사업개요

소재지	대지	건축규모	세대수
연수구 송도동 155	24,800.00㎡ (7,502.00평)	지하3층~지상49층 (3개동)	공동주택 830세대 오피스텔 125실 상업시설 113호실

- 잔금 2018.10.31. 기준으로 311억원이 회수치 못하고 있으며, 2019.4월 현재 공동주택 830세대 및 오피스텔 125실이 분양완료 되었고, 상업시설 113호실 중 20%가 분양 진행된 상태임.

2. 문제점

- 2018.10.25. 준공하여 입주가 진행되기 까지 미회수액 311억원에 대한 조치가 없음.
 - 수익권 양수도 계약서 제5조(대상자산의 양도 및 양수도 대금)제3항에 의거 양수도 대금잔액(약311억원)납입기일은 분양 목적물의 분양대금 90%전액납입을 기준으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음.

3. 감사의견

- 시행사인(주)인천글로벌시티에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분양 계획 및 아파트 미입주 세대에 대한 잔금 납부 독촉을 통하여 분양대금 90%이상을 납입 강구 바람,
- 공유재산 미회수액 311억원을 조속히 회수하기 바람.

(단위:백만원)

대금총액	선수금	미회수액	잔금청산일
62,307	31,154	31,153	2018.10.31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향후 대책 강구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1. 현 황

- 인천시는 2018.12.31. 현재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현황은 52개소 7.23km로 2020년 6월 공원지역 지정이 실효될 상황에 이른 상태임. 처음 1944년 지정된 것부터 공원지역으로 지정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임.

2. 문제점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위헌결정으로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2016년 4월에 이르러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4월 공원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후 2017년 8월 일몰제를 대비한 장기미집행공원 조치계획 수립
- 사업비 총 5,641억원 중 시비 3,837억원, 군·구비 1,804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2018년도에 약 306억원 용역을 의뢰하고 일부 정도만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8년말 현재 조성된 것은 서구 현무공원 1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 이어 2017년에 계획을 수립, 2020년 6월 일몰제 기한에 몰려 일괄적으로 계획을 실행하였고 2018년 예산만 보더라도 306억원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되었으며, 2020년 6월까지 몇 천억의 상당한 예산을 확보 실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됨.

3. 감사의견

- 공원지역의 지정을 하는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해 지정 즉시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최선이나, 부득이 상황 변화로 실행이 어려울 때에는 즉시 공원지역을 해제하여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를 등한시 할 경우, 사유재산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초래하여 지자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됨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공유재산에 대한 자산관리 철저

담당부서 : 재산관리담당관

1. 현 황

○ 결산상 일반회계의 자산 중 체육시설토지 계상 현황

(단위:원)

회계연도	증감액	2018	2017
과 목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자 산			
주 민 편 의 시 설			
체 육 시 설 토 지	(6,019,419,353)	677,266,660	6,696,686,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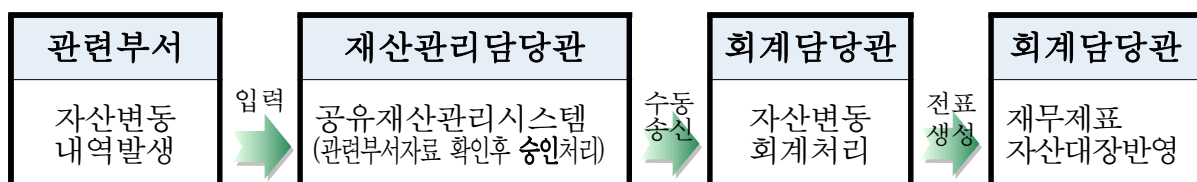
○ 일반회계의 주민편의시설 중 체육시설토지에 대한 자산금액이 전년대비 89.88% 감소됨

○ 자산감소의 주요사유 : [일반회계] 주민편의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시설	2015회계	2018회계
남동체육관	과 목	과 목
	주 민 편 의 및 사 회 기 반 시 설	주 민 편 의 및 사 회 기 반 시 설
	자산금액 6조1,399억원	자산금액 614억원
	체육시설 등 도로	체육시설 등 도로

- 2015회계연도 중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하여 건설된 남동체육관의 신규 취득 시 가액은 614억원 이었으나, 관련부서(체육진흥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자산가액 입력 시 6조 1,399억원으로 오류입력하여 재산 가액이 6조 785억원 과대계상 되었으며, 동 오류를 2018회계연도 중 발견 및 수정하여 재산가액이 감소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자산 변동 회계처리 과정



2. 문제점

- 공유재산의 자산취득이 세출외 취득자산(기부채납 등)일 경우, 담당자들의 수기입력으로 전산 상 공시가액 확인 불가
- 대규모 장기사업의 경우, 건설중인 자산관리를 포함한 지속적, 체계적인 자산관리 미흡

3. 감사의견

- 자산관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산관리관 교육 강화
- 공유재산대장(전산)의 재산입력사항 전반 점검 및 제무제표 자산대장 반영
- 미관리 누락재산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내실도모 및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제반 마련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미지급금 대체분개 반영

담당부서 : 회계담당관

1. 현 황

- 결산상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현년도 사용 잔액은 ‘미지급금’으로 반영되어야 함.
- 결산상 보조금 반납금 처리사항

(단위:원)

구 분		보조금 반납금	일반미지급금
기	타 특 별 회 계	16,241,713,041	123,581,935
	소 방	634,265	634,265
	수 질 개 선	122,947,670	122,947,670
	도 시 철 도 사 업	16,118,131,106	-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현년도 사용잔액 16,118,131,106원이 재무상태표상 부채>유동부채>기타유동부채 과목에 미계상됨.

2. 문제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118,131,106원의 미지급금 대체 분개가 생략되어 재정상태표의 기타유동부채 과목은 과소계상 되었고, 상대과목인 재정운영표상 국고보조금 수익은 과대 계상됨.

3. 감사의견

-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 잔액 금액이 미지급금으로 전액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상의 부채와 수익 계산을 수정 반영 후 결산서 제출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 계상

(단위:원)

차 변		대 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국고보조금수익	16,118,131,106	일반미지급금	16,118,131,106